
환경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전기승용 1,731대, 전기화물 448대, 전기버스 10대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6,755,870	17,162,850	22,446,000	0	-4,550	-5,278,600	-9,593,020	
국비	16,635,870	10,348,450	13,690,000		-4,550	-3,337,000	-6,287,420	
도비	924,000	210,000	168,000			42,000	-714,000	
시비	9,196,000	6,604,400	8,588,000			-1,983,600	-2,591,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78,60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승용차 1,731대 경정 (5,400천원*1,731대 - 4,550천원*관용1대) - 기정 (5,400천원*2,050대 - 4,550천원*관용1대)	= -1,722,600	
		· 전기화물차 448대 경정(15,000천원*448대 - 10,000천원*관용2대) - 기정 (15,000천원*700대 - 10,000천원*관용2대)	= -3,780,000	
		· 전기버스 10대 경정(112,000천원*10대) - 기정(112,000천원*8대)	= 224,000	

□ 예산요구 사유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25년 제2차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3365(2025. 3. 28.)호 관련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2층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버스 8대 → 10대)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7348(2025. 7. 15.)호 관련 ‘25년 제2차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하여 김포시 2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사업 물량 축소(전기승용 2,050대 → 1,731대 전기화물 700대 → 448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02.: 보급계획 수립
 - 2025. 02. ~ 2025. 06.: 상반기 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2025. 07. ~ 2025. 12.: 하반기 사업(변경) 공고 및 접수 실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전기승용 875대, 전기화물 673대, 전기버스 20대 보급
2024	전기승용 1,140대, 전기화물 249대, 전기버스 60대 보급
2025	전기승용 843대, 전기화물 154대 보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608,000	22,447,423	3,584,000	4,576,577	
2024	26,755,870	15,849,295	10,400	10,896,175	
2025	22,451,450	6,470,852	-	15,980,59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옥	전화	5364
-----	--------	------------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자체재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전기버스 6대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84,420	0	0	0	84,420	84,4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4,420				84,420	84,4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42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전기버스 6대 (14,070천원*6대)	= 84,420	

□ 예산요구 사유

- A업체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정수급사건에 수사를 받는 중 환경부는 A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김포시에 보조금 지급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김포시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전기자동차(버스) 구매 보조금 지급 불가 알림[기후에너지과-49975(2023.12.12.)]’ 처분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2023형제68103호)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보조금 지급절차를 이행하라” 는 청구인(A업체) 일부인용재결(2024경기행심1522)에 따라 2023년 미지급 전기자동차(버스) 구매 보조금 중 자체재원 예산 수립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2023년 미지급 전기자동차(버스) 구매 보조금 중 자체재원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미지급 전기자동차(버스) 구매 보조금 중 자체재원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옥	전화	5364
-----	--------	------------	-----	----------	----	------

수소차 보급 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수소승용 60대, 수소고상버스 4대		
사업목적	수소차(승용) 및 수소버스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125,000	3,350,000	5,775,000	0	0	-2,425,000	-1,775,000	
국비	3,725,000	2,390,000	4,175,000			-1,785,000	-1,335,000	
도비	270,000	108,000	270,000			-162,000	-162,000	
시비	1,130,000	852,000	1,330,000			-478,000	-278,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25,000	
수소차 보급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수소승용 60대 경정 (32,500천원*60대) -기정 (32,500천원*70대)	= -325,000	
		· 수소고상버스 4대 경정 (350,000천원*4대) -기정 (350,000천원*10대)	= -2,100,000	

□ 예산요구 사유

- 25년 제2차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수소차(승용)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 수소차(고상버스)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7251(2025. 7. 11.)호 관련 '25년 제2차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수소차(승용)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하여 김포시 25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사업물량 축소(수소승용 70대 → 60대)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7455(2025. 7. 17.)호 관련 수소고상버스 물량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하여 김포시 25년도 수소차 보급사업 사업물량 축소(수소고상버스 10대 → 4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02.: 보급계획 수립
 - 2025. 02. ~ 2025. 12.: 사업(변경) 공고 및 접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수소승용 37대 보급
2024	수소승용 16대, 수소(고상)버스 3대 보급
2025	수소승용 13대, 수소(고상)버스 2대 보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575,000	1,202,500	-	2,372,500	
2024	5,125,000	1,555,415	700,000	2,869,585	
2025	6,475,000	1,122,500	-	5,352,5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장 신우철	담당자	행정9급 장영욱	전화	5364
-----	--------	------------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양촌읍)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7. ~ 2025. 12.	사업위치	양촌읍
사업규모		물품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마을회 물품 구입 등)		
사업목적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 ☒ 보조(100%)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조(정의) "주변지역"이란 ... 중략 ...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지원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 제9호에 의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200	5,300	0	5,300	0	0	100	
국비	5,200	5,300		5,300		0	1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양촌읍)	401-01 시설비	· 양곡4리, 양곡23리 경로당 무더위쉼터 환경개선 공사 - 경정(2,800,000원) - 기정(5,300,000원)	= -2,5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양곡4리 경로당 에어컨 2대 구입(1,250천원*2대)	= 2,500	

□ 예산요구 사유

- 양곡4리 경로당 무더위쉼터 차양 및 미끄럼방지공사비 감액(△2,500천원)
- 양곡4리 경로당 에어컨 2대 구입비 증액(2,500천원)
 - 당초 무더위쉼터 개선공사 예정이었던 양곡4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경로당 에어컨 구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편성하고자 함(예산총액 변동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 2025년 보조금 교부 신청
 - 2025. 5. : 2025년 보조금 교부 결정
 - 2025. 7. ~ 2025. 11. : 사업추진
 - 2025. 12. : 보조금 사업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양촌읍 석모2리 마을회 의료기기 등 구입
2024	- 양촌읍 양곡8리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025	- 양촌읍 양곡4리, 23리 무더위쉼터 환경개선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600	5,600	-	-	
2024	5,200	4,950	-	250	
2025	5,300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김연재	전화	5384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환경지도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규모	150개소				
사업목적	먼지, 탄화수소(THC) 및 악취의 측정용역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및 강제하여 시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4,000	30,000	44,000	0	0	-14,000	-14,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4,000	30,000	44,000			-14,000	-14,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201-01 사무관리비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 경정(300,000원*50개소)-기정 = (440,000원*50개소) · 악취유발 사업장 악취 측정 : 경정(150,000원*100개지점)-기정 = (220,000원*100개지점)	-7,000 -7,000	

□ 예산요구 사유

- 견적비교 수의계약 추진에 따라 집행 품의 후 잔액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측정용역 계획 수립, 계약
 - 2025. 04. ~ 2025. 12.: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측정 실시
 - 2025. 12. : 용역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기오염물질 측정 : 먼지 50개, THC 50개 - 악취오염도 측정 : 복합악취 100개
2024	- 대기오염물질 측정 : 먼지 50개, THC 50개 - 악취오염도 측정 : 복합악취 100개
2025	- 2025.4.1.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오염도 측정 용역 착수 - 대기오염물질 측정 : 먼지 24개, THC 24개 - 악취오염도 측정 : 복합악취 26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000	29,350	-	14,650	
2024	44,000	30,587	-	13,413	
2025	44,000	-	-	44,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장 이윤석	담당자	환경7급 이순복 환경8급 김재형	전화	5651 5659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2025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1월~11월분), 2024년 12월 반입수수료 및 반입총량초과 가산금		
사업목적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로 안정적 반입 처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조, 제9조
		- 규정 제4조 :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장 또는 수입담당은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 규정 제9조 :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257,115	4,763,680	4,457,118	0	266,562	40,000	506,56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257,115	4,763,680	4,457,118		266,562	40,000	506,56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5년 반입수수료 : 경정(116,855원*30,342.3톤)-기정(116,855원*30,000톤)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 비용

□ 예산증감 사유

- 수도권매립지내 2025년 관내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30,342.3톤으로 초과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 비용 확보
-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025년 8월분 ~ 2025년 11월분 납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12. : 2025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및 반입수수료 납부
 - 2025. 03. : 2024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초과 가산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2.12.~23.11.) : 28,254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2,742,875천원 - 2022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1,467,326천원
2024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3.12.~24.11.) : 30,987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 : 3,582,476천원 - 2023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547,804천원
2025	-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24.12.~25.07.) : 20,528톤 - 반입수수료 납부액(24.12.~25.04.) : 1,474,445천원 - 반입수수료 선납액(25.05.~25.11.) : 1,800,000천원 - 2024년 반입총량 초과 가산금 : 1,159,76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07,656	4,210,201	-	197,455	
2024	4,257,115	4,130,280	-	126,835	
2025	4,723,680	4,434,212	-	289,46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장 류효녀	담당자	행정7급 전문혁	전화	2765
-----	-------	--------------	-----	----------	----	------

클린기동대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 동물사체 처리, 방치폐기물 처리 등 약 10,000건		
사업목적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클린기동대 운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2항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9,620	67,355	66,255	0	0	1,100	47,735	
국비		10,000	10,000				10,000	
도비		0					0	
시비	19,620	57,355	56,255			1,100	37,73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00	
클린기동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동계 피복비 : 110,000원*10명	= 1,100	

□ 예산요구 사유

- 무단투기의 지속적 점검 및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클린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클린기동대 동계 피복비 하반기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클린기동대 운영
 - 2025. 06. : 클린기동대 하계 피복비 집행
 - 2025. 11. : 클린기동대 동계 피복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무관리비 : 단속용 피복비(2,393천원) 집행
2024	- 사무관리비 : 단속용 피복비(2,400천원) 집행
2025	- 사무관리비 : 단속용 피복비(1,400천원)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8,120	17,164	-	956	
2024	19,620	17,906	-	1,714	
2025	66,255	53,442	-	12,81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양승민	담당자	환경7급 이은정	전화	2752
-----	-------	------------	-----	----------	----	------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파주시 방촌로 1213-52
사업규모	10,000톤/년(김포시 생활폐기물)		
사업목적	우리시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소각시설인 ‘파주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김포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협약에 의해 폐기물 처리비 및 운영비 납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위임규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광역화건설사업 협약서	제8조
		사업비 부담액 결정은 추후 실시설계 완료 후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되 부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운영규약서)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800,000	2,800,000	1,700,000	0	0	1,10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800,000	2,800,000	1,700,000			1,10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00,000	
파주환경관리 센터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 비정산비(김포40 : 파주60) - 정산비(반입폐기물 비율에 따라 정산)	= 1,100,000	

□ 예산요구 사유

-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파주환경관리센터’ 공동운영에 따라 파주시로 납부하여야 하는 우리시 부담금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하반기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부담금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를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1999. 02. 01.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건설 공사 착공
 - 2000. 07. 21.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 2003. 05. 22. :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준공
 - 2016. 07. 11. ~ 현재 : 김포시 생활폐기물 반입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2023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납부 - 폐기물 처리량 : 8,069.87톤(1월~12월), 일평균 26톤(반입일 기준) - 운영비 부담금 : 2,996,146천원 · 비정산비 : 1,809,940천원(김포40%, 파주60%) · 정 산 비 : 1,186,206천원[김포18.01%, 파주81.99%] - 주민지원기금 : 300,172천원[김포18.01%, 파주81.99%] -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구매 : 63,924천원[김포17.45%, 파주82.55%] -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 70,535천원[김포18.01%, 파주81.99%]
2024	- 2024년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납부 - 폐기물 처리량 : 6,880.39톤(1월~12월), 일평균 24톤(반입일 기준) - 운영비 부담금 : 2,918,004천원 · 비정산비 : 1,888,884천원(김포40%, 파주60%) · 정 산 비 : 1,029,120천원[김포14.92%, 파주85.08%] - 주민지원기금 : 260,051천원[김포14.92%, 파주85.08%] -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구매 : 22,248천원[김포18.01%, 파주81.99%] -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 97,615천원[김포14.92%, 파주85.08%]
2025	- 폐기물 처리량 : 6,447.71톤(1월~7월), 일평균 36톤(반입일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00,000	2,800,000	-	-	
2024	2,800,000	2,800,000	-	-	
2025	1,700,000	1,400,000	-	30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하재현	담당자	환경8급 이해정	전화	2946
-----	-------	------------	-----	----------	----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000톤/년		
사업목적	영농 후 발생되어 불법소각 및 매립되는 농촌폐비닐의 수거를 촉진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 제2항
법령 위임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5,720	105,720	58,146	0	0	47,574	0	
국비		0					0	
도비	21,144	31,716	17,443			14,273	10,572	
시비	84,576	74,004	40,703		0	33,301	-10,572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57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301-14 기타보상금	· 2025년 수거장려금 : 경정(105,720천원)-기정(58,146천원) =	47,574	도비 30%/ 시군비 7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알림(경기도 자원순환과-11992, 2025. 7. 1.)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예산 반영 필요
- 관련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국비 100%)'은 현재 연 1,000톤(사업비 20백만원) 규모로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도비 보조) 또한 사업량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업 변경 사항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사업량 확대 : 550톤/년 ⇒ 1,000톤/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2025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 확보
 - 2025. 01. ~ 2025. 12.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매월 지급
 - 2025. 03. : 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실시
 - 2025. 07. : 「2025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 2025. 11. : 가을철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실시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36.6톤
2024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1,035.7톤
2025	- 농촌폐비닐(하이덴형HDPE검정 · 로덴형LDPE흰색) 수거량 547.6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5,720	105,720	-	-	
2024	105,720	105,720	-	4	
2025	58,146	55,942	-	2,20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장 박장호	담당자	행정8급 이지원	전화	2773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해양하천과



모정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3. 1. ~ 2027. 12.	사업위치	대곶면 올생리 ~ 초원지리
사업규모	하천개수 1.06km, 교량 5개소		
사업목적	미개수 하천의 개수사업 실시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6항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해당조례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1항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7,086	2,362,642	0	0	0	2,362,642	2,115,55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7,086	2,362,642				2,362,642	2,115,55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362,642	
모정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모정천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등 보상비 지급 (약 111개 필지, 33,721㎡ 및 지장물)	= 2,362,642	

□ 예산요구 사유

- 실시설계 완료예정(10월 중)에 따라 편입필지 및 보상조서 확정 예정
-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조속한 사업비 확보 필요
- 보상지연 시 사업착공 차질 우려 및 주민 민원 발생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임에 따른 보상비 미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12. :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사업순위 1순위)
- 2023.0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05. : 주민설명회 완료
- 2025.10.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5.11.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상계획 공고
- 2026.06. : 모정천 정비사업 착공
- 2028.06. : 모정천 정비사업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18,400,000	253,551	2,362,642	0	0	0	2,362,642	15,783,807
공 정 별	설계비	253,551	253,551	0					
	보상비	2,362,642		2,362,642				2,362,642	
	공사비	15,783,807		0					15,783,807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추진 - 주민설명회 추진
2025	-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0,000	222,914	247,086	-	
2024	247,086	30,638	216,448	-	
2025	216,448	186,949	-	29,499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개수 1.06km, 교량 5개소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362,642
부기명 (세부사업)	모정천 정비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읍생리 ~ 초원지리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6급 진미란	전화	5428
-----	-------	------------	-----	----------	----	------

25년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 2025. 9.	사업위치	관청천, 학현천, 양곡천
사업규모	소하천 3.4km 준설 및 폐기물처리		
사업목적	우기 전, 호우대비 소하천의 원활한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선제적 준설 실시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20,000	0	0	0	220,000	220,000	
국비		0					0	
도비		220,000				220,000	220,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0	
2025년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	401-01 시설비	. 준설공사 : 10,000원/m ³ *2,000m ³ . 폐기물 운반처리용역 : 50,000원/ton*4,000ton	= 20,000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호우대비 소하천준설 재난관리기금 자금 교부[경기도 하천과-12727(2025.7.7.)호]
- 도비(100%) 보조사업으로 2025년 호우대비 소하천준설사업 성립전예산편성 [예산법무과 -10554(2025.7.11.)]
- 우기 전, 호우대비 소하천의 원활한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선제적 준설 정비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우기 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수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의 긴급 준설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7. : 2025년 소하천 준설 성립전 예산 편성
 - 2025.07. : 공사 착공
 - 2025.09.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북부권 및 남부권 소하천 준설 2,564m³, 폐기물 처리 2,252ton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20,000	699	-	219,301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3.4km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20,000
부기명 (세부사업)	2025년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	사업위치	관청천 외 2개소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7급 최성은	전화	5427
-----	-------	------------	-----	----------	----	------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 복구공사

사업기간	2025. 10. ~ 2026. 3.	사업위치	하성면 봉성리 640-18번지 일원
사업규모	하천 사면 보강 L=100m		
사업목적	국가하천 무제부 구간 사면 유실 및 침하를 복구하여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100%)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위임규정	하천법	제92조 제6의2항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	하천법	제27조 제6항(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70,827	0	0	0	170,827	170,827	
국비		170,827				170,827	170,827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827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 복구사업	401-01 시설비	. 무제부 사면 복구공사 1,000천원/㎡ x 170㎡	= 170,827	

□ 예산요구 사유

- 국비100% 사업으로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한강유역환경청-1731(2025.8.26.)호]
- 하천 사면의 토사 유실로 인해 사면부 세굴이 가속화되면서 사면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갈수기 신속한 복구공사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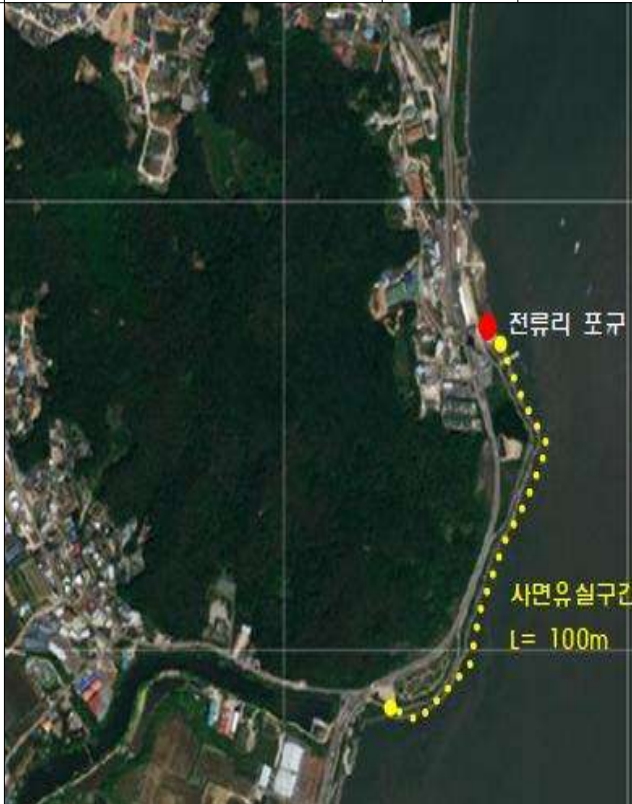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0. ~ 11. : 실시설계 용역 및 군협의 추진
 - 2025.12. ~ 03. : 공사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500,000	0	170,827	0	0	0	170,827	329,173
공 정 별	설계비	20,000		20,000				20,000	
	보상비	0		0					
	공사비	480,000		150,827				150,827	329,173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하천사면 보강 L=100m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70,827
부기명 (세부사업)	한강 전류리구간 사면 복구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봉성리 640-18번지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임수진	담당자	녹지6급 진미란	전화	5428
-----	-------	------------	-----	----------	----	------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항1로 109
사업규모	대명항 1개소(면적: 52,010㎡)		
사업목적	어촌어항 개선을 통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제47조의6
	제47조의3(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7조의6(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800,000	7,800,000	3,000,000	0	0	4,800,000	4,0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00,000	7,800,000	3,000,000			4,800,000	4,0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800,000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일괄위탁 사업비 : 4,800,000,000원	= 4,800,000	

□ 예산요구 사유

-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는 '24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2층까지 골조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진행 중임
- 2025년 완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비 미편성분 예산 반영 필요, 미편성 시 공사 중지 우려

□ 예산증감 사유

- '24년 10월 수산물직판장 착공에 따라, '22년 이월 사업비 5,150,800천원 중 국도비 4,069,132천원 전액을 '24년도에 우선 집행하였으며, 시비 잔액 969,488천원은 '25년 6월 시로 반납하였음
- 이에 따라, '24년 미편성분 4,315,744천원과 '22년 시비 잔액을 포함한 총 4,800,000천원을 예산에 필히 반영되어야 사업이 연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승인	-	-	-
일자	2024.11 반영	2021.2.(도)	-	-	-	-	2022.9.(도)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 : 공모사업 대상지 대명항 확정
- 2021.02. : 지방재정 道 투자심사 완료
- 2021.09. :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원안 승인
- 2023.02. : 건축물 디자인 선정 및 세부설계 착수
- 2023.12. :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어항:항만시설) 완료, 가로경관정비 완료
- 2024.02. :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협의
- 2024.09. : 인허가 협의 완료
- 2024.10. : 분수조형물, 문화광장 조성 완료,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착수
- 2025.12. : 수산물직판장 신축 완료
- 2026.01. : (구)수산물직판장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착수
- 2026.04. : 주차장 조성 완료[어촌뉴딜사업 완료]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24,007,512	16,207,512	7,800,000	3,000,000	0	0	4,8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1,165,000	1,165,000	0					
	보상비	0		0					
	공사비	17,136,512	9,336,512	7,800,000	3,000,000			4,800,000	
	감리비	0		0					
	부대비	5,706,000	5,706,00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건축물 디자인 선정 및 시행계획 세부설계 착수 - 가로경관사업 완료 -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완료
2024	- 어업인 소득 법인 설립 완료 -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협의 완료 - 분수조형물, 문화광장 조성 완료, 수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착수
2025	- 수산물직판장 신축 공사 완료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50,800	6,250,800	-	-	
2024	3,800,000	3,800,000	-	-	
2025	3,000,000	3,000,0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 수산물판매장 신축 4,309㎡ - 가로경관, 주차장정비 15,359㎡ - 문화광장, 분수조형물 설치 1,200㎡	3회추경 요구액 (천원)	4,8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위치	대곶면 대명항1로 109		
수산물 직판장 조감도					
2층까지 골조완료 현재 내부 공사중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45여가		
사업목적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5,650	1,250	0	0	0	1,250	-34,400	
국비	28,520	1,000				1,000	-27,520	
도비		0					0	
시비	7,130	250				250	-6,8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5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01-01 사무관리비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운영비 : 1,250,000원	= 1,250	

□ 예산요구 사유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해양수산부에서 10월경 예산 확정
- 직불제 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운영비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우선 반영
[경기도 해양수산과-4660(2025.3.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2025.07.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08. ~ 2025.11. :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 2025.01. ~ 2025.12.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5.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직불금 지급 47어가 / 37,762천원
2024	- 직불금 지급 41어가 / 34,050천원
2025	- 신청서 접수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8,450	37,762	-	10,688	
2024	35,650	34,050	-	1,600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7어가		
사업목적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100	1,000	0	0	0	1,000	-8,100	
국비	9,100	1,000				1,000	-8,1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소규모어가 직불제	201-01 사무관리비	· 소규모어가 직불제 운영비 : 1,000,000원	= 1,000	

□ 예산요구 사유

-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해양수산부에서 10월경 예산 확정
- 직불제 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운영비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우선 반영
[경기도 해양수산과-4660(2025.3.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2025.07. :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08. ~ 2025.11. :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 2025.11. ~ 2025.12.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5.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직불금 지급 4어가 / 4,984천원
2024	- 직불금 지급 5어가 / 6,500천원
2025	- 신청서 접수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800	4,984	-	6,816	
2024	9,100	6,500	-	2,600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어선원 직불제

사업기간	2025. 5.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0어가		
사업목적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소득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400	1,000	0	0	0	1,000	-23,400	
국비	24,400	1,000				1,000	-23,400	
도비		0					0	
시비		0					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어선원 직불제	201-01 사무관리비	· 어선원 직불제 운영비 : 1,000,000원	= 1,000	

예산요구 사유

- 어선원 직불제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예산증감 사유

- 어선원 직불금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해양수산부에서 10월경 예산 확정
- 직불제 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운영비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우선 반영
[경기도 해양수산과-4660(2025.3.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2025.07. : 어선원 직불제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08. ~ 2025.11. : 지급대상자 자격 검증
 - 2025.11. ~ 2025.12.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5.12. : 사업 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직불금 지급 23어가 / 28,151천원
2024	- 직불금 지급 18어가 / 24,400천원
2025	- 신청서 접수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3,400	28,151	-	5,249	
2024	24,400	24,400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사업기간	2025. 10. ~ 2025. 11.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67-18, -20, -21
사업규모	부지면적 1,184㎡[부지 소유자 : 영어조합법인 한강어촌체험마을(법인 해산)]		
사업목적	체험장 부지 매입을 통해 토지(법인 소유) 및 건물(시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향후 체험장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5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2. 농어촌 체험교육 및 도농자매결연 4. 농특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홍보 6. 그밖에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245,360	0	0	0	1,245,360	1,245,3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45,360				1,245,360	1,245,36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45,360	
한강어촌 체험장 부지 매입	401-01 시설비	· 부지매입비(전류리 67-18) : 1,100,000원*1,089㎡ · 부지매입비(전류리 67-20) : 360,000원*56㎡ · 부지매입비(전류리 67-21) : 700,000원*39㎡	= 1,197,900 = 20,160 = 27,300	

□ 예산요구 사유

- 장기 미운영 및 운영자가 없어 방치되어있는 체험장 운영 정상화 및 전류리포구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 추진
- 향후 체험장 위탁운영자 모집 후 어촌체험 방안 모색 및 체험장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선정 시(2025년 하반기) 전류리 포구 개발과 더불어 포구 바로 옆에 어판장 및 체험장 건물 신축 건립하여 체험 다양화·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승인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2025. 2.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7. : 부지매입 계획 수립
- 2025.02. :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 2025.07. : 부지매입비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
- 2025.08. : 매입협의 공문 발송
- 2025.09. : 매입가격 협상 및 매매계약 체결
- 2025.09. :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 심의
- 2025.10. : 대금 지급 및 소유권 등기 이전
- 2025.11. : 위탁운영 방안 수립 및 체험장활성화 방안 모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2025년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부지면적 1,184㎡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245,360
부기명 (세부사업)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67-18, -20, -21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박성원	전화	5452
-----	-------	------------	-----	------------	----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대명항
사업규모	어선 디젤기관 1대		
사업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0	42,000	0	0	-42,000	0	
국비		0	21,000			-21,000	0	
도비		0	21,000			-21,000	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000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어선기관 : 70,000,000원*1대*60%=42,000,000원 전액 삭감 =	-42,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전액 감액 [경기도 해양수산과-13657(2025.7.11.)호]

□ 예산증감 사유

- 본 사업은 어선 노후 엔진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로 교체 지원하여 탄소배출 감축,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 신청자는 최근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나 사업 신청자들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대상에서 제외.
- 이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자부담 능력 부족 또는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사업대상자 없음
-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타시군 예산 재배정을 위해 우리 시 예산 전액을 감액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2025.02. : 신청자 자격 검증 결과 제외대상
 - 2025.06. : 사업대상자 추가 수요조사 실시[대상자 없음]
 - 2025.07. : 경기도 → 김포시 예산 감액 내시 통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2025년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42,000	-	-	42,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7급 안영준	전화	5451
-----	-------	------------	-----	------------	----	------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어업인
사업규모		구명조끼 230개		
사업목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 시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②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9,915	0	0	0	29,915	29,915	
국비		11,966				11,966	11,966	
도비		11,966				11,966	11,966	
시비		5,983				5,983	5,98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915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팽창식 구명조끼 구입 : 130,065원*230개	= 29,915	

□ 예산요구 사유

-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을 통해 각종 해상 재난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5.10. : 구명조끼 보급 지원
 - 2025.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2025년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3,932	-	-	23,93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해양수산팀장 김준환	담당자	해양수산9급 장서진	전화	5456
-----	-------	------------	-----	------------	----	------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사업기간	2025. 9. ~ 2026. 10.	사업위치	풍무동 573-3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 L=105m(울타리 70경간)		
사업목적	김포시-인천광역시 서구 간 계양천 산책로를 연결하는 하부 산책로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 할 책무를 진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20,000	0	0	20,000	200,000	22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0			20,000	200,000	220,000	특교세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	401-01 시설비	· 데크산책로 설치 : 200,000,000원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3년 주민참여제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서구 구간의 사업주체 미확정과 인천검단 수질개선시설 공사중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2023년 2회 추경 예산 반납 처리
- 인천검단 수질개선시설의 준공(5월)과 202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측에서 산책로 연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 재추진

□ 예산증감 사유

-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사업을 위한 2025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선정에 따른 예산 증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0. : 주민참여예산 채택
 - 2023.07. :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주체 미확정, 계양천 수질개선시설 공사
 - 2023.12. : 2023년 2회 추경 전액감액
 - 2025.09. : 원당교 하부 산책로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26.01. :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부족분 반영
 - 2026.03. : 공사 착공
 - 2026.06.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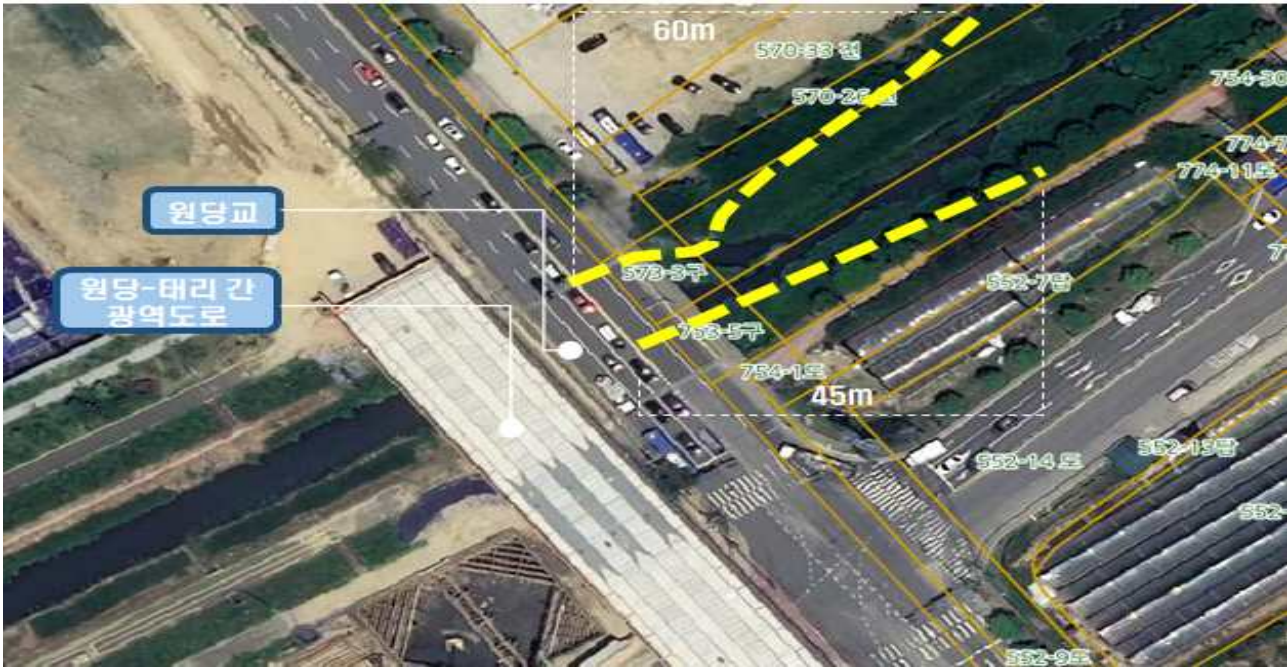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	-	-	2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데크산책로 설치(L=105m, B=2m)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 사업	사업위치	풍무동 573-3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인천시 방향(원경)				
					
	인천시 방향(근경)				
					
	김포시 방향(원경)				
					
	김포시 방향(근경)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녹지8급 이나경	전화	5415
-----	-------	------------	-----	----------	----	------

해 · 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08. 12. ~ 계속	사업위치	(한강구간) 일산대교 ~ 김포대교 8.4km (염하구간) 초지대교 ~ 인천시계 6.6km
사업규모	어민이동로 포장(2.7km), 군 작전지역 환경정비장비 구입 등		
사업목적	경계철책 철거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수변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계)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	제5조 제1항
		김포시장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009,762	1,400,000	1,000,000	0	0	400,000	-1,609,762	
국비	648,524	0					-648,524	
도비	350,000	0					-350,000	
시비	2,011,238	1,400,000	1,000,000			400,000	-611,23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401-01 시설비	· 한강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 어민이동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 2,700m*474,074원/m ※ 경정(1,280,000천원)-기정(1,000,000천원)	= 280,000	
	405-01 자산취득비	· 군 작전지역 환경정비장비 구입 : 30,000,000원*4대 ※ 군협의 조건사항(어민이동로 포장)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50여 년간 경계철책에 막혀 있던 자연환경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 김포 한강 및 대명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2008년 합의각서에 따라 설치한 감시장비(삼성SDS)의 군성능시험불합격으로 중단되었던 한강 구간 경계 철책 철거사업이 최근 군부대(육군 제17사단)와의 합의각서(변경) 체결 관련 협의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음
- 군부대(육군 제17사단)와의 협의 완료된 어민이동로 포장사업(2.7km)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조건부추진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2.11. (재심사)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한강구간]

- 2008.12. : 합의각서 체결 (김포시 - 육군 제17사단)
- 2010.06. ~ 2022.10. : 감시장비 성능 미달에 따른 소송 진행(김포시 승소)
- 2022.10. ~ : 사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한강유역환경청, 육군 제17사단) 협의
- 2024.06. : 합의각서 변경을 위한 협의
- 2024.09. : 경계철책 구간 중 부분개방 협의 완료(육군 제17사단)
 - ↳ ① 윤형철책 철거(7.9km) ② 데크산책로 설치(3.4km) ③ 어민이동로포장(2.7km) ④ 통문개방(3개소)
- 2024.12. : 백마도 일원 사업계획(안) 검토 요청(육군 제17사단)
- 2025.01. ~ 03. : 백마도 일원 이용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육군 제17사단)
- 2025.03. : 경계철책 철거 관련 실무토의 검토결과 회신(육군 제17사단)
 - ↳ 기 협의('24.9.)된 조건부 동의 완료된 사업부터 시행요구(어민이동로포장 등)
 - ↳ 백마도 개방 및 일원(김포대교~백마도) 철책철거 “추가 협의 필요”
- 2025.04. ~ : 백마도 일원 추가 실무협의 지속 추진(육군 제17사단)

○ 향후계획

[한강구간]

- 2025.07. ~ 10. : 어민이동로 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하천점용허가 절차 이행
- 2025.11. ~ 12. : 어민이동로 포장공사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32,270,302	19,485,302	1,400,000	1,000,000	0	0	400,000	11,385,000
공 정 별	설계비	651,000	579,000	22,000	22,000				50,000
	보상비	0		0					
	공사비	30,855,000	18,262,000	1,258,000	978,000			280,000	11,335,000
	감리비	0		0					
	부대비	764,302	644,302	120,000				12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한강구간) (일산대교 - 전류리포구 8.4km) 철책철거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 (염하구간) 염하강 경계철책 철거구간 통신공사 계약 및 착공(초지대교 ~ 인천시계 6.6km) - (염하구간) 염하강 경계철책 철거구간 3.3km에 대한 통신, 전기선로 가이설 완료
2024	- (한강구간) 경계철책 구간 중 부분 사업추진 협의완료 - (염하구간) 염하강 산책로 경관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5	- (한강구간) 백마도 개방 및 일원 철책철거 실무협의 추진 - (염하구간) 염하2구간 경계철책 철거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339,361	1,679,600	2,659,761	-	
2024	3,009,762	100,141	2,909,621	-	
2025	3,909,621	4,840	3,904,781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철책 철거, 군 작전보완시설 설치 등	3회추경 요구액 (천원)	40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사업위치	(한강구간) 일산대교 ~ 김포대교 8.4km (염하구간) 초지대교 ~ 인천시계 6.6km		

위치도
및
현장사진

경계철책 철거 개요

구분	구간	구간거리	구간구분	구간구분
한강구간	1구간	5.4km	1선, 2선	1선, 2선
	2구간	3.0km	1선	1선
염하구간	1구간	3.3km	1선, 2선	1선, 2선
	2구간	3.3km	2선	2선

어민이동로 콘크리트포장 사업계획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친수조성팀장 황지영	담당자	시설7급 남지연 녹지7급 정다운	전화	5413 5417
-----	-------	------------	-----	----------------------	----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운양배수펌프장 등 26개소
사업규모	배수펌프장 26개소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목적	집중호우 시 즉각적인 펌프장 가동으로 침수피해 최소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제4조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써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24,760	2,182,015	1,782,015	0	0	400,000	557,25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24,760	2,182,015	1,782,015			400,000	557,2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수도) : 400,000,000원 경정(1,840,000,000원)-기정(1,440,000,000원)	= 400,000	

- 예산요구 사유
- 기상이변에 따른 배수펌프장 가동 횟수 증가로 전기요금 상승

- 예산증감 사유
- 전기요금 총액(1~8월) 2024년 618,769천원 → 2025년 917,818천원(48% 증가)
- 전년대비 8월기준 공공운영비 약 3억 증가 + 잔여기간 집중호우 대비 1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납부
 - 2025.02. ~ 2025.05. :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정비 및 시운전
 - 2025.05. ~ 2025.10. : 재해대책기간 중 배수펌프장 운영(가동) 및 수시 점검
 - 2025.11. ~ 2025.12. : 배수펌프장 가동 후 시설물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공운영비(전기, 수도, 통신요금) 납부 -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배수펌프장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점검 및 수리
2024	- 공공운영비(전기, 수도, 통신요금) 납부 -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배수펌프장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점검 및 수리
2025	- 공공운영비(전기, 수도, 통신요금) 납부 -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배수펌프장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점검 및 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15,980	1,490,813	-	125,167	
2024	1,624,760	1,510,158	-	114,602	
2025	1,782,015	1,017,500	-	764,51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방재안전8급 김민형	전화	5443 5444
-----	-------	------------	-----	------------------------	----	--------------

봉성2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기간	2025. 12.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178번길 165
사업규모	노후 배수펌프 1대 교체		
사업목적	노후 배수펌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배수펌프장 설비 성능 유지 및 침수피해 최소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하천법	
		제2조 및 제4조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법 제4조]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00,000	300,000	0	0	0	300,000	-5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00,000	300,000				300,000	-500,000	특교세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노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401-01 시설비	· 노후 배수펌프 교체 : 300,000,000원*1대	= 300,000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요구(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3032(2025.8.14.))
-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시설로 정기적인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 필요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800,000천원)[경기도 예산담당관-24569(2024.12.31.)]
- 2025년 특별교부세(300,000천원)[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3032(2025.8.1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12. : 물품 구매 계약 체결
 - 2026.06. : 배수펌프 교체 및 시운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2025	- 향산2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2대 교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00,000	-	800,000	-	
2025	800,000	800,000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해양하천과	사업규모	배수펌프 600kW 1대 교체	3회추경 요구액 (천원)	3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봉성2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누산봉성로178번길 165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해양하천과	방재시설팀장 이동근	담당자	공업7급 손준영	전화	5443
-----	-------	------------	-----	----------	----	------